

# 2022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 개요

###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9조 2,652억원으로 기정예산(24조 2,059억원) 보다 5조 592억원 (20.9%)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당초예산(23조 3,359억 4천 1백만원) 보다 5조 9,292억 1천 6백만원(25.4%)이 증액된 수준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3,335,941	24,205,932	29,265,158	5,929,216	5,059,225	25.4	20.9	
지방세수입	23,095,574	23,095,574	23,095,574	-	-	-	-	
세외수입	경상적	68,933	68,933	126,914	57,981	57,981	84.1	84.1
	임시적	169,149	169,149	169,149	-	-	-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746	746	746	-	-	-	-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539	1,539	1,539	-	-	-	-
보전수입등	보전수입등	-	869,991	5,871,235	5,871,235	5,001,244	100.0	574.9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예산액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53,997	923,988	5,983,213	5,929,216	5,059,225	
세외수입		53,997	53,997	111,978	57,981	57,981	
공공예금 이자수입		53,997	53,997	111,978	57,981	57,98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869,991	5,871,235	5,871,235	5,001,244	
순세계잉여금		-	735,515	1,681,959	1,681,959	946,444	
법정잉여금		-	134,476	4,189,243	4,189,243	4,054,76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	33	33	33	

2. 세출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4,559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1,984억원 대비 8.0%(2,574억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당초예산(3조 196억 3천만원) 보다 2,598억 2천 5백만원(8.1%)이 증액된 수준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3,196,030	3,198,431	3,455,855	259,825	257,424	8.1	8.0	
행정관리	소계	853,944	856,345	856,584	2,640	239	0.3	0.0
	행정운영경비	794,085	794,085	794,085	-	-	-	-
	재무활동	15,431	15,463	15,499	68	36	0.4	0.2
	사업비	44,428	46,797	47,000	2,572	203	5.8	0.4
교부금	2,342,086	2,342,086	2,599,271	257,185	257,185	11.0	11.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342,465	2,342,465	2,599,889	257,424	257,424	11.0	11.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110	110	187	77	77	70.0	70.0
국고보조금 반환 (재무과)	-	-	33	33	33	순증	순증
재정보전금	1,866,943	1,866,943	1,959,075	92,132	92,132	4.9	4.9
국고보조금 반환 (세제과)	0.6	0.6	3.6	3	3	500.0	5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69	269	395	126	126	46.8	46.8
시세 징수교부금	475,143	475,143	640,196	165,053	165,053	34.7	34.7

## II. 검토의견

### 1.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은 52조 1,841억원으로 기정 예산(45조 8,133억원) 대비 13.9%(6조 3,709억원) 증액된 수준임.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가	
			금 액	비율
총계규모	52조 1,841억원	45조 8,132억원	6조 3,709억원	13.9%
일반회계	37조 9,557억원	32조 4,737억원	5조 4,820억원	16.9%
특별회계	14조 2,284억원	13조 3,395억원	8,889억원	6.6%

####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규모: 6조 3,709억 원

※ 세출예산(6조 3,640억원) = 증액사업(6조 5,763억원) + 감액사업(△2,054억원)

- 의무경비 등 4조 8,656억원
- 재정투자사업 1조 7,107억원
  - 안심·안전: 안심돌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 4,011억원
  - 일상회복 가속화: 여가 및 문화·관광 활성화, 일상회복 촉진 9,262억원
  -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3,834억원

-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출(2022.7.13.) 하였음.

〈서울특별시 제2회 추경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분야	사업내용	예산액
안심·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쪽방주민 2,453명 대상 동행식당 50개소 운영(급식단가 8,000원)</li> <li>·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7,000원→8,000원)</li> <li>·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약 39만명 지원)</li> <li>· 생계유지가 곤란한 55,000가구 대상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li> </ul>	4,011
일상회복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광수요 회복 대비 기반 마련</li> <li>·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및 생활지원금 지원</li> <li>· 대중교통 손실보전(도시철도 1.5천억원, 시내버스 3.3천억원, 마을버스 150억원)</li> </ul>	9,262
도시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대로, 동북선 경전철, 진접선 차량기지 등 교통인프라 구축</li> <li>· 전기차·수소버스 총 8,497대 추가 보급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추가 설치</li> <li>· 서울사랑상품권 2,120억원(광역 1,000억원, 지역 1,120억원) 추가 발행</li> </ul>	3,834
의무경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 의무경비 4조 942억원</li> <li>·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 7,650억원, 예비비 64억원</li> </ul>	48,656

○ 이 중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 주요 편성 사유는 2021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조 8,712억원)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8,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조 12억원을 2022년도 세입예산(순세계 잉여금, 법정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및 의무경비 등 지출에 필요한 세출예산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 '21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조 4,428억원(일반회계 5조 8,712억원, 특별회계 5,716억원)

## 2. 재무국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9조 2,651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5조 592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 당초예산(23조 3,359억 4천 1백만원) 대비 5조 9,292억 1천 6백만원(25.4%)이 증액된 수준임.

-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1,119억 7천 8백만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1조 6,819억 5천 9백만원)’, ‘법정잉여금(4조 1,892억 4천 3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3천 3백만원 순증)’으로 구성되어 있음.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예산액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53,997	923,988	5,983,213	5,929,216	5,059,225
세외수입	53,997	53,997	111,978	57,981	57,981
공공예금이자수입	53,997	53,997	111,978	57,981	57,98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869,991	5,871,235	5,871,235	5,001,244
순세계잉여금	-	735,515	1,681,959	1,681,959	946,444
법정잉여금	-	134,476	4,189,243	4,189,243	4,054,767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	33	33	33

가. 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서울시 금고에 공금예금 또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119억 7천 8백만원으로 기정(당초)예산 대비 107.4%(579억 8천 1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징수액(5월)	추경예산	증감
53,997	62,177	111,978	57,981 (107.4%)

- 금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5월 말 현재 이미 예산액(539억 9천 6백만원) 대비 115.1%(621억 7천 7백만원)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결산 전망액에 근거하여 세입예산을 조정 하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최근 5년간 결산 실적을 보면 2021회계연도의 경우 309.1%의 세입 결산율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다한 세입액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평균 잔액\* 규모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일정 기간 동안의 시금고에 예치된 공금 잔고를 평균한 금액

- 월 평균 잔액 산출 : 일 마감 후 잔액의 합 ÷ 해당 월의 일수
- 연 평균 잔액 산출 : 일 마감 후 잔액의 합 ÷ 365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당초)	결산 전망
39,267	55,562	39,200	49,136	35,404	20,429	13,923	43,039	53,997	111,978
결산율: 141.5%		125.3%		57.7%		309.1%		207.4%	

※ 시금고 평균 잔액 관련 이자수입 세입처리

- 공금예금 : 1월(전년도 하반기 이자), 7월(상반기 이자)
- 정기예금 : 매월(정기예금 예치일)
- 근거규정 : 금고업무 취급 약정, 공금예금 이자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결산 후에 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예금 예치일에 지급

## 나.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 재무국은 2021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조 8,712억원)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8,700억원) 외의 잔여액 5조 12억원을 2022년도 세입예산(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2021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조 4,428억원(일반회계 5조 8,712억원, 특별회계 5,716억원)

###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세입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예산액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	869,991	5,871,202	5,871,202	5,001,211
순세계잉여금	-	735,515	1,681,959	1,681,959	946,444
법정잉여금	-	134,476	4,189,243	4,189,243	4,054,767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것으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법정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 한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5조 3,401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5,311억원)을 합한 5조 8,712억원으로 전년(3조 4,653억원) 대비 69.4%(2조 4,059억원) 증가한 수준임.

〈2021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집행액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2021	47조 7,591	52조 8,591	45조 3,337	7조 5,254	9,972	853	6조 4,428
일반회계	33조 8,348	39조 1,730	32조 9,602	6조 2,127	2,665	751	5조 8,712
특별회계	13조 9,243	13조 6,861	12조 3,735	1조 3,126	7,307	102	5,716
2020	46조 7,985	49조 5,397	44조 4,099	5조 1,297	1조 89	1,082	4조 126
증 감	9,606	3조 3,194	9,238	2조 3957	△117	△199	2조 4,30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1,644억원) 제외, 보조금 반납금은 실제 반납예정 금액

- 여기서 세입(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법정정산금(2조 5,073억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적립(1조 6,820억원)을 차감하여 금년 재정투자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조 6,820억원 수준임.

※ 금번 추경에 따른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규모는 가용재원 이외에 감액사업 재원을 합한 1조 7,107억원 수준임.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법정의무경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결산결과	산출 내역
순세계잉여금(A)	5,871,202	
법정정산금(B=C+D+E)	2,507,285	
교육청 전출금(C)	822,408	
지방교육세	258,580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24,014	담배소비세 45% '21회계 미전출분 177억원 포함
보통세	539,814	보통세 10%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재산세, 지방 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제외)
자치구 교부금(D)	1,494,871	
조정교부금	1,237,685	보통세(재산세 제외) 22.6%

구분	'21년 결산결과	산출 내역
재정보전금	92,133	특별시분 재산세 100%
징수교부금	165,053	자치구 위임 시세 3%
<b>타회계 전출금(E)</b>	190,006	
도시개발특별회계	129,973	재산세 도시지역분 × 70%
교통사업(주차)특별회계	18,568	재산세 도시지역분 × 10%
주택사업(재촉)특별회계	18,568	재산세 도시지역분 × 10%
주택사업(도정)특별회계	18,568	재산세 도시지역분 × 10%
소방특별회계	4,329	소방분×100% - 소방분징수교부금
<b>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잉여금(F=A-B)</b>	3,363,917	
<b>통합재정안정화기금(G=F×50%)</b>	1,681,959	(순세계잉여금 - 법정정산금) × 50% 이상 적립
<b>가용자원(F-G)</b>	1,681,959	

○ 한편, 이처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급증 원인은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액(20조 237억원) 대비 6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지방세수입 초과징수(29.9%, 5조 9,774억원)에 따른 것임.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산출**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5조 8,712억원

- 세입초과징수\* : 5조 3,401억원(예산현액 : 33조 8,348억원, 결산 : 39조 1,730억원)
  - ▶ 지방세 초과징수 : 5조 9,774억 원(예산현액 : 20조 237억원, 결산 : 26조 12억원)
  - ▶ 세외수입 부족징수 : △6,373억 원(예산현액 : 1조 7,527억원, 결산 : 1조 1,153억원)
- 세출 집행잔액 : 5,311억원

◆ 세입초과징수 주요 내용

○ 지방세 : 26조 12억원(예산현액 대비 5조 9,774억원 초과징수)

- **취득세 8조 100억원 …… 2조 9,511억원 초과징수(158.3%)**
  -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공시가격의 상승, 부동산의 공급 부족과 잦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패닉 바잉에 의한 세입 증가
- **지방소득세 7조 4,273억원 …… 2조 2,309억원 초과징수(142.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증가 등

- 재산세 등 기타 10조 5,639억원·····7,955억원 초과징수(108.1%)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주택 평균 14.9% 상승) 정책효과 등
- 세외수입 : 1조 1,153억원(예산현액 대비 △6,373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5,231억원·····△7,277억원 부족징수(41.8%)
    - DMC 부지 매각 추진지연(7,500억원↓) 등으로 부족 징수
  - 임시적 세외수입 5,874억원·····929억원 초과징수(118.8%)
    - 시비보조금반환수입(954억원↑) 예산 미편성 등에 따른 초과 징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 (A) + (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22년 편성	제2회: 5조 12억원	69.4	5조 3,401억원	5,311억원
	제1회: 8,700억원			
'21년 편성	3조 4,653억원	50.4	2조 9,298억원	5,355억원
'20년 편성	2조 3,044억원	7.6	1조 8,407억원	6,224억원
'19년 편성	2조 1,419억원	△11.9	1조 6,176억원	6,000억원
'18년 편성	2조 4,314억원	18.1	1조 9,284억원	5,640억원

- 결산상 과다한 초과세입의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재원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바,
  -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재무국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재무국에서는 2022년도 '지방세수입'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세입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거래 위축이 나타나 2022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 지방소득세는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면 활동 관련 산업의 회복이 지체될 것으로 보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도,
- 2022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을 전년(20조 238억원) 대비 15.3%(3조 719억원) 증액하여 본예산으로 편성(23조 956억원)한바 있음.
- 이는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26조 12억원)의 88.8%(△2조 9,056억원) 수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지방세수입	20조 237억원	26조 12억원	5조 9,775억원	129.9	23조 3,930억원	2조 6,082억원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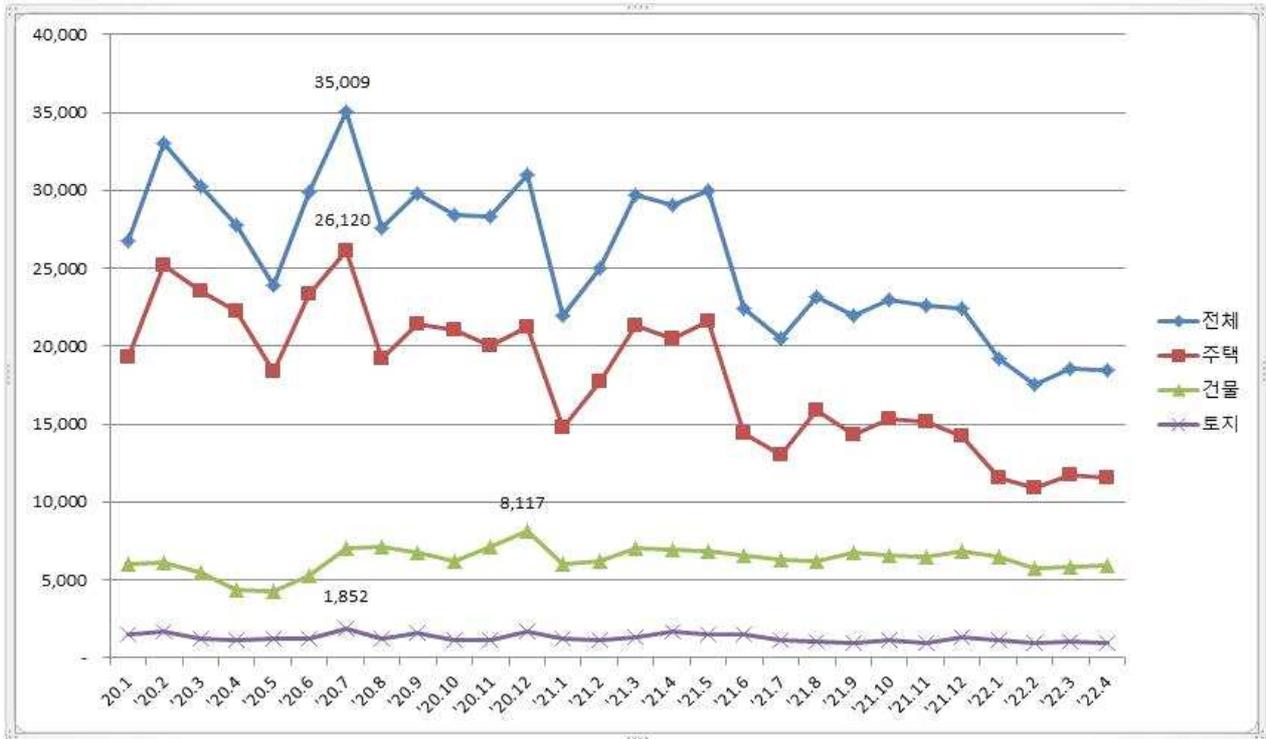
- 금년 4월 기준 '지방세수입' 세입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7조 6,241억원) 대비 93.4%(7조 1,204억원, △5,037억원) 징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입예산 과목인 취득세의 경우 큰 폭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36.6%)로 인하여 전년 동기(2조 7,486억원) 대비 80.8% (2조 2,219억원, △5,267억원) 징수하는데 그치고 있는바,

〈주요 세목별 시세·세외수입 징수실적〉 (기준: '22년 4월,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예산 (A)	목표대비 증·감액 (B=C-A)	4월 누계 징수액		전년 동기 실적 대비		
			징수액 (C)	진도율 (C/A)	'21.4월 누계(D)	증감액 (E=C-D)	증감율(%) (C/D)
<b>합 계</b>	248,979	-174,967	74,012	29.7%	78,566	-4,554	94.2%
<b>시 세</b>	230,956	-159,752	71,204	30.8%	76,241	-5,037	93.4%
취 득 세	62,046	-39,827	22,219	35.8%	27,486	-5,267	80.8%
지 방 소 득 세	60,521	-31,686	28,835	47.6%	31,191	-2,356	92.4%
지 방 소 비 세	21,892	-16,045	5,847	26.7%	3,819	2,028	153.1%
재 산 세	38,276	-38,269	7	0.0%	2	5	
기 타 세 목	48,221	-33,925	14,296	29.6%	13,743	553	104.0%
<b>세 외 수 입</b>	18,023	-15,215	2,808	15.6%	2,325	483	120.8%
임 대 · 사 용 료	3,217	-2,636	581	18.1%	421	160	138.0%
사 업 수 입	8,893	-8,474	419	4.7%	337	82	124.3%
기 타	5,913	-4,105	1,808	30.6%	1,567	241	115.4%

- 전년 대비 지방세수입의 세입예산 목표 달성을 위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시 세입예산을 감액하는 예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량 추이(부동산 취득세 신고 기준)〉



#### 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세입), 국고보조금 반환금(세출)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에서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개별부서 추계 등을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 이에 따라 재무국에서는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대상 금액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이자 포함)에 반영하려는 것임.

※ 세입(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건, 33,175천원, 세출(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35,971천원

**<재무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추경(세입·세출) 산출 내역>**

-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국비100% (단위: 천원)

사업명 / 예산과목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반납액
인력운영비(통합편성)	416,831	386,570	30,261	2.669	32,930
보수	380,260	351,687	28,573		
직급보조비	13,020	13,020	-		
성과상여금	23,551	21,863	1,687		

- 세제과: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국비50% : 시비50% (단위: 천원)

사업명 / 예산과목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반납액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400		9,572	5,828	127	3,041
사무관리비	국비	6,980	4,746	2,234		
	시비	6,980	4,746	2,234		
국내여비	국비	720	40	680		
	시비	720	40	680		

※A =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보조금정산잔액 =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세입)

※A + 이자 =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세출)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7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b>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b>	

○ 다만, 재무국에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재무국(세제과)에서는 사업연도로부터 2년차에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무국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 추경 내역>**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국고보조금 반환 (재무과)	-	-	33	33	33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세제과)	<b>0.6*</b>	<b>0.6</b>	3.6	3	3	500.0%	500.0%

\* 2020년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계상건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추계하여 적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 예산운영 기준에 맞는 국고보조금 운영을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3.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조 4,559억원으로  
기정예산(3조 1,984억원) 대비 2,574억원(8.0%) 증액된 수준임.

※ 당초예산(3조 1960억 3천만원) 대비 2,598억 2천 5백만원(8.1%)이 증액된 수준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3,196,030	3,198,431	3,455,855	259,825	257,424	8.1%	8.0%	
행정관리	소계	853,944	856,345	856,584	2,640	239	0.3%	-
	행정운영경비	794,085	794,085	794,085	-	-	-	-
	재무활동	15,431	15,463	15,499	68	36	0.4%	0.2%
	사업비	44,428	46,797	47,000	2,572	203	5.8%	0.4%
교부금	2,342,086	2,342,086	2,599,271	257,185	257,185	11.0%	11.0%	

○ 추가경정 예산 편성 대상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사업의 ‘연금지급금’(1억 1천만원)과 “국가보조금 반환\*”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2건, 3천 6백만원),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921억 3천 2백만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사업의 ‘기타 보상금’(1억 2천 6백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사업의 ‘징수교부금’(1,650억 5천 3백만원) 등 총 6개 사업의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세입추경 부분에서 함께 다루었음.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기정(당초)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계	2,342,465,494	2,599,889,435	257,423,941	11.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110,057	186,857	76,800	69.8%
연금지급금	110,057	186,857	76,800	69.8%
국고보조금 반환(재무과)*	-	32,930	32,930	100.0%
국고보조금반환금	-	32,930	32,930	100.0%

세부사업별	기정(당초)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재정보전금	1,866,943,000	1,959,074,763	92,131,763	4.9%
자치구기타채원조정비	1,866,943,000	1,959,074,763	92,131,763	4.9%
국고보조금 반환(세제과)	590	3,631	3,041	515.4%
국고보조금반환금	590	3,631	3,041	515.4%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69,117	395,204	126,087	46.9%
기타보상금	269,117	395,204	126,087	46.9%
시세 징수교부금	475,142,730	640,196,050	165,053,320	34.7%
징수교부금	475,142,730	640,196,050	165,053,320	34.7%

### 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 본 사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퇴직 수요의 증가로 개정 「공무원연금법」(2018.9.21. 시행) 적용 대상이 되기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연금지급금’(퇴직금)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으로 편입(「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2018. 9. 21.)),
  - ※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수당’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연금지급금) 지급 기준이 유리하여 대부분 이를 선택하고 있음.
    -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6.5% ~ 39%)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당초)예산(1억 1천만원) 대비 70.0%(7천 7백만원\*) 증액된 1억 8천 7백만원 수준임.

\* 산출기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3,840천원×20명 = 76,800천원

- ‘연금지급금(307-07)’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근 거 법 령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장해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금 충당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편성목)’ 중 ‘기타직보수(통계목, 101-02)’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퇴직금(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편성목)’ 중 ‘연금지급금(통계목, 307-07)’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 지출액으로, 이를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 경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재무국에서는 퇴직금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금년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본 퇴직금(연금지급금) 집행을 위해 예비비(1억 3천 5백만원)를 사용(2022.4.8. 승인)하고도,

-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예산 확보를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증 7천 7백만원)을 제출하였는바, 당초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말
예산액 (현액)	3,775,959	4,395,151	726,559	334,708	245,236
집행액	2,086,057	1,665,795	599,763	222,783	174,793
집행률	55.2%	37.9%	82.5%	66.6%	71.3%
비고	본예산 686,000 추경예산 2,733,458 예비비 356,501	개별사업으로 편성			본예산 110,057 예비비 135,179

※ 물품구매및재무관리효율화 사업 안에 편성하던 것을 2019년부터 개별 세부사업으로 편성

## 나.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9,590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1조 8,669억 4천 3백만원) 대비 4.9%(921억 3천 2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재정보전금 :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분재산세 징수액을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법정경비

**<재정보전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기정(당초)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재정보전금	1,866,943	1,959,075	92,132	4.9%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1,866,943	1,959,075	92,132	4.9%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근거<sup>1)</sup>하여,

-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제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동 재산세전출금’과,

**< 공동재산세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교부액	1,751,370	1,577,165	1,300,009	1,165,213	1,077,375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2021년 공동재산세 전출금(1조 7,514억원) = 2021년 예산액(1조 6,454억원) + 2021회계연도분 결산상 정산액(1,060억원) - 면허세 보전금(303억원)

1) - 「지방세 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제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되는 법정 경비로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임.

※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교부액	30,260	30,780	31,640	32,380	33,28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대상인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상 초과세입분에 대한 ‘자치구기타재원 조정비’를 4.9%(921억 3천 2백만원)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공동재산세 전출금 1,737,557,763,000원('21년 결산액) = 92,131,763천원 -1,645,426,000,000원('21년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사유
	'21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정산분을 '22년 예산에 편성 필요

<재정보전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말
예산액 (현액)	1,197,593,382	1,331,648,979	1,607,945,148	1,781,630,523	1,866,943,000
집행액	1,197,593,382	1,331,648,979	1,607,945,148	1,781,630,523	14,740,000
집행률	100%	100%	100%	100%	0.8%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세목에 비해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비교적 용이한 세목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 최근 4년 중 6% 내외의 꾸준한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음.

- 매년 세입추계 오차로 인한 고액의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보수적인 재산세 세입추계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재산세 초과세입 발생 추이>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1	33,945	33,945	36,460	2,515	107.4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2018	23,694	23,694	24,980	1,286	105.4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분	재산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p>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p> <p>-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li> <li>• 토지 : 시가표준액의 70%</li> <li>•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li> </ul>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공동재산세 물건 중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에 따른 재정보전금 균등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규모 차이가 최대 5.3배 (2021회계연도 결산, 강남 4,473억원 : 강북 841억원)에 달하고 있는바,
  -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정보전금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 (결산액 기준)

2019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20.1배(강남5,712억, 강북 284억)에서 5.0배(강남3,400억, 강북686억)로 완화
2020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21.9배(강남6,512억, 강북 298억)에서 5.1배(강남3,870억, 강북763억)로 완화
2021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7,556억, 강북 292억)에서 5.3배(강남 4,473억, 강북 841억)로 완화

<2021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완화 효과, 강북구 기준>

-2021년 결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

(단위: 억원/배)

구분	2021년 당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34,750	17,375	17,375	34,750	-	-	-
종로구	1,166	583	695	1,278	112	4	1.5
중구	1,712	856	695	1,551	△161	5.9	1.8
용산구	1,672	836	695	1,531	△141	5.7	1.8
성동구	1,072	536	695	1,231	159	3.7	1.5
광진구	730	365	695	1,060	330	2.5	1.3
동대문	608	304	695	999	391	2.1	1.2
중랑구	406	203	695	898	492	1.4	1.1
성북구	636	318	695	1,013	377	2.2	1.2
강북구	292	146	695	841	549	1.0	1.0
도봉구	292	146	695	841	549	1.0	1.0

노원구	544	272	695	967	423	1.9	1.1
은평구	584	292	695	987	403	2	1.2
서대문	614	307	695	1,002	388	2.1	1.2
마포구	1,448	724	695	1,419	△29	5	1.7
양천구	1,090	545	695	1,240	150	3.7	1.5
강서구	1,112	556	695	1,251	139	3.8	1.5
구로구	626	313	695	1,008	382	2.1	1.2
금천구	424	212	695	907	483	1.5	1.1
영등포	1,604	802	695	1,497	△107	5.5	1.8
동작구	814	407	695	1,102	288	2.8	1.3
관악구	586	293	695	988	402	2	1.2
서초구	4,336	2,168	695	2,863	△1,473	14.8	3.4
강남구	7,556	3,778	695	4,473	△3,083	25.9	5.3
송파구	3,590	1,795	695	2,490	△1,100	12.3	3
강동구	1,236	618	695	1,313	77	4.2	1.6

## 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 본 사업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세액에 대하여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납입액의 2%를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교부금 지급 사업으로,

※ 10개구 15개 납세조합에 대하여 분기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납세조합에 지급

※ 「소득세법」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하 생략)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2억 6천 9백만원) 대비 46.9%(1억 2천 6백만원)를 ‘기타 보상금(301-12)으로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임.

※ 본예산의 경우 예산과목을 징수교부금(308-02)으로 269,117천원 편성한바 있음.

< 서울특별시 소재 납세조합 내역 >

연번	자치구	조합명	지정연도	조합원수	주소	업종별
계	10개구	15개 조합		5,526		
1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납세조합	1993	368	세종로 32	외국기관
2		주한일본대사관 납세조합	1978	78	중학동 18-11일본대사관	외국기관
3		세양을근 납세조합	2002	34	세문안로5가길 28 (적선동) 1907호	외국기업
4		한국해외취업선원 납세조합	1975	542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10층	외국기업
5	중구	한국화훼납세조합	1981	51	남창동49-1 대도E동3층	화훼
6		중부시장 해산물 납세조합	1977	172	오장동44-12 중부빌딩403	해산물
7	용산구	글로벌을근 납세조합	2006	718	한강대로 92	외국기업
8		남산을근 납세조합	1983	1,198	원효로1가 41, 용산더프리임 19층	외국기업
9	성북구	강남 납세조합	2002	22	성북동31-57	외국기업
10	마포구	한국을근 납세조합	1978	747	상암동 1660 월드컵파크 710-401	외국기업
11	양천구	오렌지납세조합	2013	177	목동서로201 KT정보통신센터20층	외국기업
12	영등포구	서울지구 납세조합	1977	915	여의도동 10-2	외국기업
13	동작구	노량진농수산물 납세조합	1976	257	노들로 674	수산물
14	강남구	일신납세조합	2017	243	강남구 테헤란로77길 23	외국기업
15	송파구	가락축산물 납세조합	1997	4	가락동 600	축산물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95,204	269,117	126,087 (46.9%)
기타보상금	126,087	0	126,087 (순증)
징수교부금	269,117	269,117	0 (0%)

- 다만, 당초 본예산 예산과목은 ‘징수교부금(308-02)’으로 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과목을 ‘기타 보상금(301-12)’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민간 조합에 반대 급부적 경비로서 기존대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임.

※ 재무국은 본예산 ‘징수교부금’(269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변경(‘22.2.21.)하였음.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산액	요구액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감	증
재무국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08-02 징수교부금	2022- 02-21	269,117	△269,117	-
				301-12 기타보상금		-	-	269,117

※ 납세조합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시도(부산, 인천, 경북, 제주) 또한 해당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집행한 바 있음.

- 그 이유는 관계 법령에서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칭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징수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이하 생략)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이에 대하여 재무국에서는 현행 ‘징수교부금’의 지급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한하고 있는 사항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시(재무국 세무과-4377, 2022.2.)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의견>**

현행('22년 기준)		개정안('23년 기준안임)	
3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3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02. 징수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b>또는 민간인</b> 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한편, 본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매년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2019년 41.5%, 2021년 100.0%),
  - 2021년 귀속 지급액의 부족으로 2022년도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함으로써 6월 말 현재 97.9%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예산 집행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추경액 1억 2천 6백만원은 2021년 3, 4분기 징수 실적에 대한 지급 대상 금액임.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보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말
예산액 (현액)	531,000	546,930	218,772	172,474	269,117
집행액	462,877	227,106	197,790	172,474	263,527
집행률	87.2%	41.5%*	90.4%	100.0%	97.9%

\* 교부율 인하(2019.1.1. 시행, 교부율 5%→2%)

※ 국세(2% 등)에 비해 지방세(5%)에 대한 교부율이 지나치게 높은 부당성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의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2019.1.1.부터 현행 교부율(2%)로 인하되었음.

## 라. 시세 징수교부금

- “시세 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

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 초과세입(5조 9,775억원) 중 본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목(7개)에 해당하는 초과세입액을 반영한 6,401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4,751억 4천 3백만원) 대비 34.7%(1,650억 5천 3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시세 징수교부금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기정(당초)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시세 징수교부금	475,143	640,196	165,053	34.7%
징수교부금	475,143	640,196	165,053	34.7%

**<최근 3년간 지방세세입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수납율 (B/A)
2021	200,237	200,237	260,012	59,775	129.9
2020	195,524	195,524	233,930	38,406	119.6
2019	182,213	182,213	204,581	22,368	112.3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 (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징수교부금 교부액 규모는 이미 연 6,402억원(2021회계연도 결산)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가칭)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 시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세 징수교부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말
예산액 (현액)	419,906,628	424,431,388	468,125,760	510,458,159	475,142,730
집행액	419,906,628	424,431,388	468,125,760	510,458,159	452,127,194
집행률	100%	100%	100%	100%	95.2%

<시세 징수교부금 자치구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금액	점유비								
계	419,907	100.0	424,431	100.0	468,126	100.0	510,458	100.0	452,127	100.0
종로	16,147	3.8	16,150	3.8	16,871	3.6	19,160	3.8	17,641	3.9
중구	24,141	5.7	25,943	6.1	26,240	5.6	28,123	5.5	28,006	6.2
용산	14,774	3.5	13,579	3.2	15,997	3.4	19,779	3.9	16,878	3.7
성동	12,975	3.1	12,574	3.0	14,998	3.2	17,520	3.4	15,330	3.4
광진	11,035	2.6	10,837	2.6	11,700	2.5	12,053	2.4	10,963	2.4
동대문	11,080	2.6	10,909	2.6	11,680	2.5	12,183	2.4	10,396	2.3
중랑	9,502	2.3	9,687	2.3	10,895	2.3	11,224	2.2	9,596	2.1
성북	12,136	2.9	12,147	2.9	13,254	2.8	13,899	2.7	11,716	2.6
강북	7,193	1.7	7,142	1.7	7,866	1.7	8,023	1.6	6,827	1.5
도봉	7,818	1.9	8,095	1.9	8,763	1.9	9,119	1.8	7,459	1.6
노원	12,475	3.0	12,208	2.9	13,948	3.0	13,973	2.7	11,429	2.5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6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은평	11,984	2.9	11,887	2.8	13,241	2.8	13,647	2.7	11,208	2.5
서대문	9,302	2.2	9,525	2.2	10,744	2.3	11,032	2.2	9,259	2.0
마포	17,379	4.1	17,626	4.2	19,480	4.2	20,918	4.1	18,749	4.1
양천	13,418	3.2	13,472	3.2	15,379	3.3	15,743	3.1	12,701	2.8
강서	20,295	4.8	21,046	5.0	23,155	5.0	25,466	5.0	21,311	4.7
구로	14,836	3.5	14,366	3.4	16,162	3.5	17,510	3.4	15,330	3.4
금천	11,124	2.6	11,760	2.8	12,525	2.7	13,759	2.7	12,027	2.7
영등포	25,845	6.2	26,475	6.1	29,945	6.4	33,931	6.6	29,867	6.6
동작	11,312	2.7	11,195	2.6	12,323	2.6	13,900	2.7	11,365	2.5
관악	12,134	2.9	11,732	2.8	12,838	2.7	12,902	2.5	10,749	2.4
서초	33,882	8.1	35,277	8.3	36,409	7.8	42,300	8.3	38,292	8.5
강남	56,277	13.5	55,372	12.9	60,498	12.9	68,284	13.4	68,968	15.3
송파	29,336	7.0	31,414	7.4	32,960	7.0	37,426	7.3	31,569	7.0
강동	13,507	3.2	14,013	3.3	20,255	4.3	18,584	3.6	14,491	3.3

※구청별 실제 집행한 내역임(귀속년도 결산 정산분 익년 반영).

## 마. 의회의 의결 대상 안건의 제출기한 규정 준수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제출(회기시작 2일전)함에 따라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상당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 2022.7.13., 본 회기(제311회) 시작일 : 2022.7.15.

※ 예산안의 경우 의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42조).

< 의회 의결안 등 제출 기한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의2(의안 발의)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